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6. 10. 26.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10월 10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16. 10. 2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서만원)

가. 제안이유

- 환경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에 불합리한 지방규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에 대해 중복·반복되는 조항 정비(안 제10조 수정, 안 제10조의2 삭제)
- 불합리한 규제 조항 삭제(안 제20조제2항)
 - 과태료를 부과한 후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태선)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요청에 따라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현 조례의 조항 중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1)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안 제20조 제2항을 삭제함.
 - 해당 조항의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써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침익적 행정행위로 환경부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와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2) 제10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조항과 제10조의2(감면대상자에 대한 지원) 조항에 중복되는 사항을 안 제10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로 정비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167 호
----------	---------

제출연월일 : 2016. 10.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에 존재치 않아 법적 근거가 모호한 해당 조례 제20조 제2항을 환경부 권고에 따라 삭제하여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시 2개월 개선기간 부여 삭제(제20조제2항)
- 해당 조항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으로 불필요한 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사항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부패영향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실시(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 입법예고(2016.05.19.~ 06.08,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을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면”을 “감면하거나 지원”으로 한다.

제10조의2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10조의2(감면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제10조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감면 및 지원할 때에는 감액처리 하거나,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생략)</p> <p>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제10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 ----- ----- ----- 감면하거나 지원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삭제></p> <p>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p> <p><삭제></p> <p>③、④ (현행과 같음)</p>